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339

발의연월일: 2024. 9. 26.

발 의 자 : 김원이 · 조인철 · 이기헌

박희승 • 신정훈 • 김남근

김선민 · 서미화 · 박민규

김동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어 있으며 정기회는 100일을, 임시회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국정감사는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

한편,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하여 국정감사, 예산안 심의, 법률안 및 기타 안건의 심의뿐만 아니라 국정에 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이 이루어짐. 통상적으로 정기회 기간 중인 9월 말이나 10월 초에 국정감사가 실시됨에 따라 정기회 기간 중 법률안 심의에 집중하기 어렵고,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예산안 심사가 단기간내에 이루어져 내실 있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정감사를 연중 1회 실시함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이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같은 문

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등 국정감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임위원회가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감사 일정을 분리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원회 의결로 감사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감사 운영의 탄력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항, 제2항 및제5항).

법률 제 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국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시작일부터 3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3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국회운영위원회"를 "이 경우 감사 기간을 분리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국회운영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을 "상임위원회는 의결로 제4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사실시일 7일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를 "변경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감사계획서의 변경된 내용을 감사실시일 7일 전까지 감사 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국정감사) ① 국회는 국정	제2조(국정감사) ①		
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			
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			
전에 <u>국정감사(이하 "감사"라</u>	<u>30일</u> 이내의 기간을 정하		
한다)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여 국정감사(이하 "감사"라 한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	<u>다)</u>		
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			
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사는 상임위원장	②		
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따라 한			
다. <u>국회운영위원회</u> 는 상임위원	이 경우 감사 기간을 분리		
회 간에 감사대상기관이나 감	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할 수		
사일정의 중복 등 특별한 사정	있으며, 국회운영위원회		
이 있는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 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u>제4항</u> 에 따른 감사계획서의	⑤ 상임위원회는 의결로 제4항		
감사대상기관이나 감사일정 등			
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u>변경할 수 있다</u> . <u>이 경우</u>		

<후단 신설>

을 감사실시일 7일 전까지 감 감사계획서의 변경된 내용을 사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감사실시일 7일 전까지 감사대 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